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05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내용

□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 추가로서 그 상세내역은, 토지매입 1건 4,125㎡ 46,754천원임.

○ 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, 마하리 195번지 외 4필 4,125㎡

3. 첨부자료 및 참고사항

가.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

나. 관계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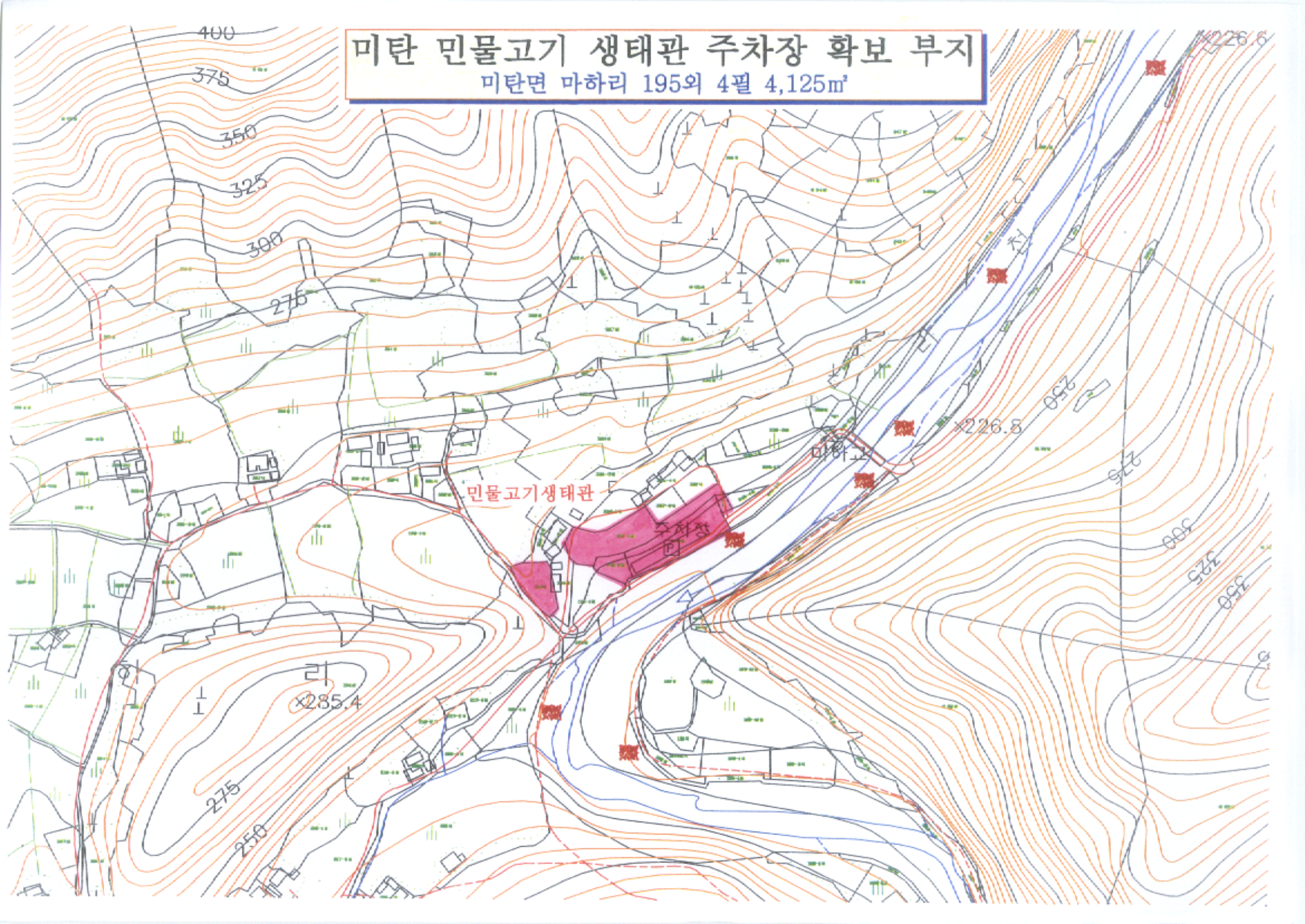
다. 예산조치사항 -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보

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 (공시지가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소유자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합 계			4,125	46,754			
2	소 계			4,125	46,754		
	묘	마하리 195	724	695	하반기	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	국(재경부)
	답	마하리 337-1	1,560	18,408			국(환경부)
	답	마하리 340	1,430	22,308			
	답	마하리 340-2	331	4,303			
	답	마하리 340-3	80	1,040			

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확보 부지
미탄면 마하리 195의 4필 4,125㎡



미탄 민물고기 생태관 주차장 확보 부지
미탄면 마하리 195외 4필 4,125㎡



토지대장열람조서

<미탄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부지>

재산의 표시				소유자		비고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m ²)	성명	주소	
소계	5필		4,518			
마하리	195	묘지	724	국(재경부)		
마하리	337-1	답	1,560	국(환경부)		
마하리	340	답	1,430			
마하리	340-2	답	724			
마하리	340-3	답	80			

위와 같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바,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

2007. 04. 12.

재무과 지방지적주사 김택용 (인)



『민물고기 생태관』 주차장 조성 계획

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마하리 재해위험지구 지정이후 높이 2.5m 폭 6m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감소하여 향후 동강과 생태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주차장 불편이 예상됨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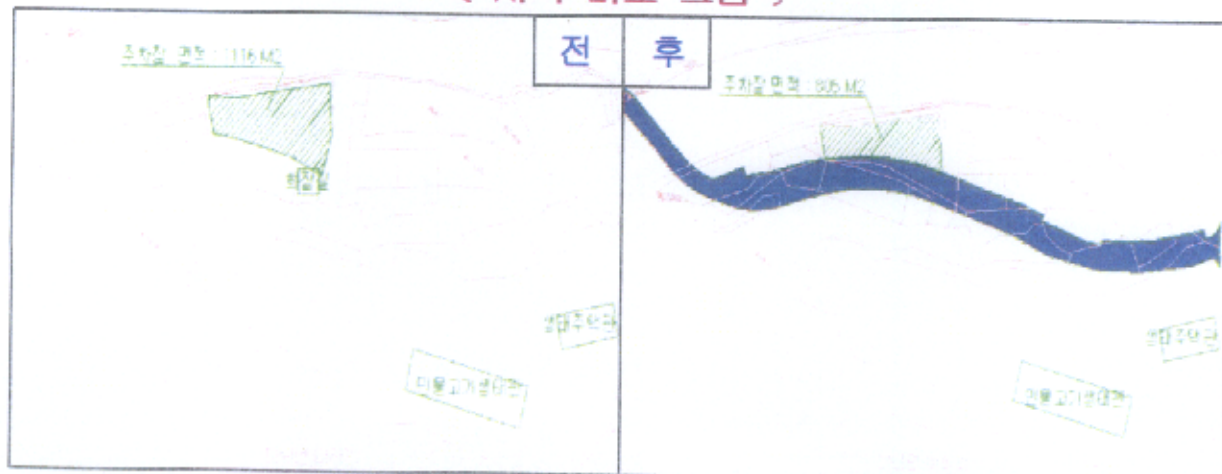
I. 사업개요

- 위 치 : 미탄면 마하리 324외2필지
- 사 업 량 : 대지 10,350㎡, 생태관 1,627㎡(지하1, 지상2)
- 사 업 비 : 8,542백만원(국비:4,271 도비:1,979군비:2,292)
- 사업기간 : 2003~2008

II. 주차장 비교

구분	도로 설치 전	도로 설치 후
주차장 면적	1,116㎡	805㎡

[지적 비교 그림]



[현장사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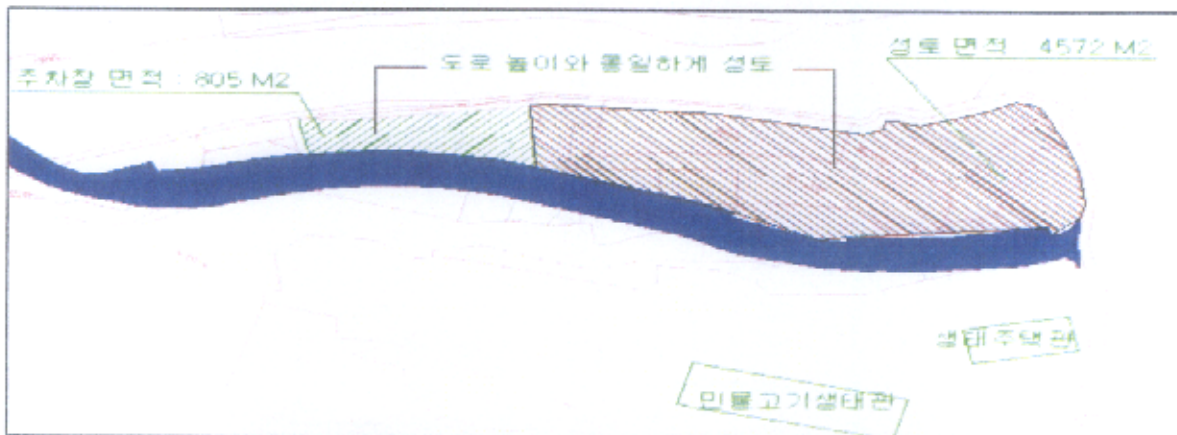


Ⅲ. 주차장 확보 방안

[방안] 기존 주차장 부지와 주변 환경부 토지를 포함하여 2007년 완공될 2.5m높이 도로에 맞춰 성토 후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으로 조성

구 분	조성 전	조성 후
주차장 면적	805㎡	5,377㎡

[성토 후 그림]



[부가 효과]

【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한 사토(약19,000㎡)를 성토재로 사용함으로써 사토 처리비용(약5억)으로 주차장 조성과 사토처리 2가지 효과기대】

IV.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 계획

가. 매입대상

(단위 : m², 천원)

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소유자
지목	소재지	면적		
총계	6필지	4,901	147,030	
답	미탄면 마하리 337-1	1,560	46,800 (30,000원 × 1,560m ²)	국(환경부)
답	미탄면 마하리 340	1,430	42,900 (30,000원 × 1,430m ²)	국(환경부)
답	미탄면 마하리 340-2	331	9,930 (30,000원/m ² × 331m ²)	국(환경부)
답	미탄면 마하리 340-3	80	2,400 (30,000원/m ² × 80m ²)	국(환경부)
묘	미탄면 마하리 195	724	21,720 (30,000원/m ² × 724m ²)	국(재정경제원)
답	미탄면 마하리 340-1	776	23,280 (30,000원/m ² × 776m ²)	김석규외 1인

※ 환경부 토지 - 원주지방환경청 협의완료(2007. 1.22)

나. 공유재산심의 승인신청 : 2007. 1. 31일한(재무과 통보)

다. 예산확보 : **162,030천원**(2007 1회 추경) - 예산부서 협조

- 토지매입비 : 147,030천원
- 농지보전부담금 : 15,000천원

라.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매입 : 2007. 6월 완료

V. 설계변경 계획

가. 각종 인·허가 협의 ----- 2007. 7.

- 농지전용, 하천 점용허가 등

나. 설계변경 및 계약 ----- 2007. 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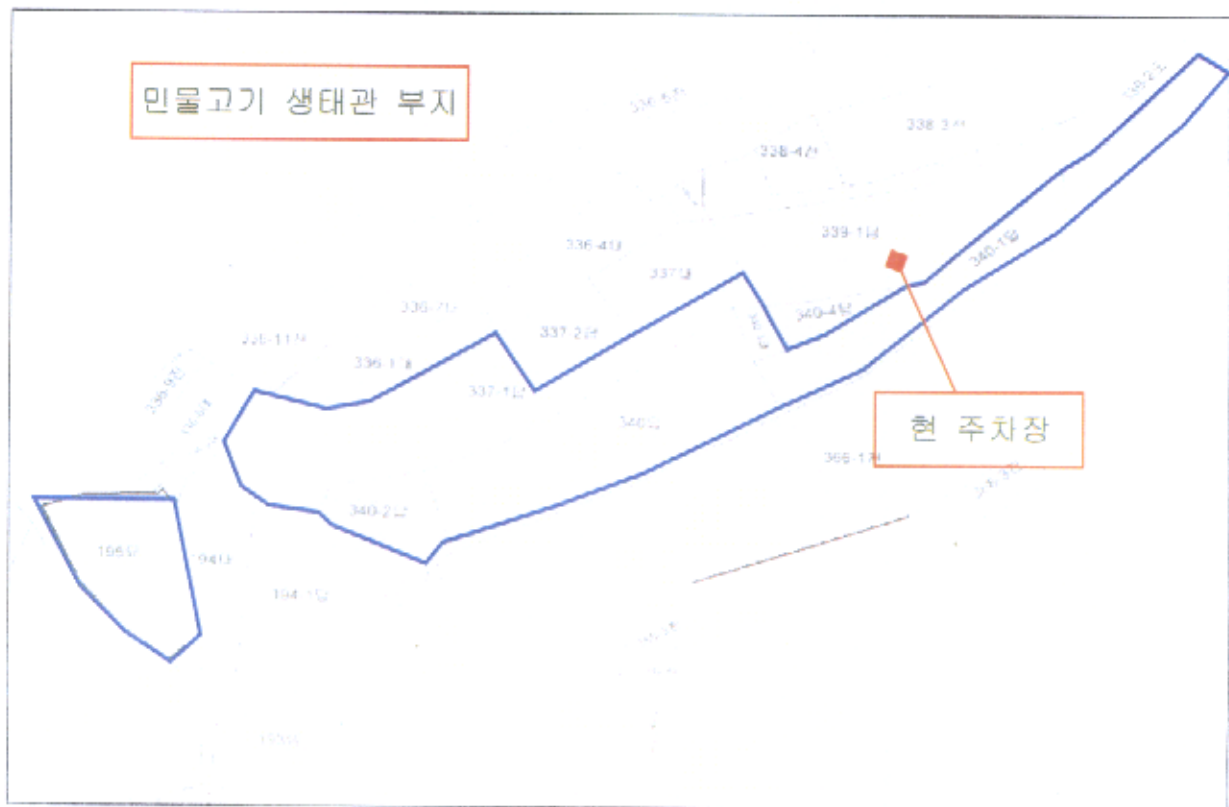
- 변경내용 : 사업비 변경(약 5억 증가 예상), 물량변동, 공사기간

[붙임]

[위치도, 현장사진]



[지적도]



관 계 법 령 발 취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